고흥군의회 공고 제2022-13호

주민 청구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 공표

「지방자치법」 제19조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1. 청구 조례명 :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김선호

○ 주 소 :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중앙길 15-2

3.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편의와 복리증진 하고자함

4. 주요내용

○ 행정구역 변경의 대상이 되는 섬을 특정 및 취지 규정

○ 지역주민과 양식업자 등 어업인들의 권익보장

5. 연서주민수 : 2,985명

6.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2022. 07. 29. ~ 2022. 08. 7.(10일간)

○ 장　　소: 고흥군의회사무과 1층

7.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이의신청기간: 2022. 07. 29. ~ 2022. 08. 7.(10일간)

○ 이의신청방법: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에 취지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고흥군의회사무과로 제출

8. 기타 행정사항

○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고흥군 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61-830-60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